

가정상담

2021

통권 458호



KOREA LEADERSHIP IN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자녀 성 결정에 관한 조항,

「민법」 제781조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안

17 • 특집 | 2020년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상담 사례 분석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㉓

24 • 가정폭력상담실

27 • 어떻게 할까요

29 •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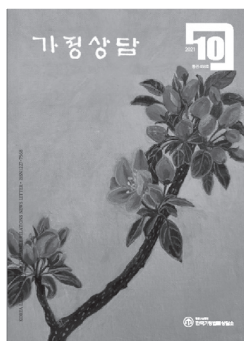
불법자들

30 • 결혼과 인생(221) 영화 이야기

파도가 지나간 자리 _ 김용언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짜투리정원 꽃사과나무〉



가부장제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가족 문화의 형성을 바라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몇 년 전만 해도 설, 추석 명절 전후로 많은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른바 ‘명절 증후군’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들에게만 집중되는 명절 가사노동의 문제에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상들을 기린다는 명분이라지만 상을 차리는 것은 그 조상들과는 성이 다른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쉬고 먹고 하며 명절 휴일을 즐기다가 상 앞에 모여 절만 한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어서는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고 다른 지방으로 며칠씩 다녀오고 나면 몸도 피곤하고 친가 가족들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니 남성들의 명절증후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러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서서히 시작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네 명절 풍습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후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명절증후군 대신 전통적인 제사와 차례 그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추석에 1박 이상 귀성을 계획하는 이들의 비율이 늘 30%를 넘다가 작년

과 올해 연이어 10%대에 그쳤으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응답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때가 온다면 제사와 차례는 지내지 않겠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일방적 노동과 희생을 보며 자란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인을 기리는 다른 방식을 찾겠다고도 말합니다. 주변에서도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봅니다. 어떤 경우 어머니가 제사를 정리하자 장남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족들이 모이는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본인 혼자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글을 쓴 이는 끝내 가부장으로 남은 장남의 모습을 두고 '우리 시대 마지막 가부장들의 어떤 모습, 자신들은 짐을 벗지 못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짐 지우지 않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부장제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입니다.

부계 혈통 위주의 가부장제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관혼상제라는 인생의 통과 의례 또한 여기에 토대를 두고 문화와 관습을 생성했습니다. '관'과 '혼' '상'은 이미 사라졌거나 새로운 문화와 관습으로 대체되었고 이제 '제' 또한 사라지는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인을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더미처럼 음식을 장만하고 차리고 나누는 것이 농경사회, 먹을 것이 늘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지금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고, 생산이 아니라 분배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문화와 관습도 변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 문제의 현장,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를 최일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는 제사를 비롯해 모든 가족 문화는 가족 구성원 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강요나 구속도 없이 누구나 각자의 성격, 사고방식, 정서 그리고 인생관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정의 풍습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정착된다면 이러한 문화야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지요? 개개인에 따라 각자 원하는 대로 계속 제사를 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종교에 따라 종교적 행위로 대신하거나 가족마다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혼과 일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복지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관습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행복하고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사와 차례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는 모두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개인의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개인들이 그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적이며 평등하고 성숙한 가족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향해가는 과도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흐름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적절치 않은 것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수(精髓)만 남아 새로운 우리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녀 성 결정에 관한 조항, 「민법」 제781조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안

I. 서론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母)의 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하는 것으로 모에 대한 부의 우월적 지위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원칙 조항은 성차별적 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 이념에 어긋나고,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위배되며 자녀 성 결정에 관한 국제적 권고기준과 각국의 입법 흐름과도 상치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민법 제781조의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동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민법 제781조의 개정 운동은 호주제 폐지 운동과 같이 진행되었고,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제781조 제1항은 ‘子は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는 종전의 규정에서 부가입적 규정은 삭제되고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

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성강제주의에서 부성우선주의원칙으로 완화되었을 뿐 부성주의는 여전히 법에 의해 원칙으로기준이 되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견서 제출 그리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부성우선주의원칙의 개정을 촉구하였고, 2013년 9월에 실시한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필두로 민법 제781조 개정안 마련과 서명, 심포지엄 개최 등 본격적인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섰다. 그동안 민법 제781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입법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 결정에 관한 민법 제781조 규정은 가족법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차별적 조항으로 부모의 평등한 지위에 입각하여 자녀의 복리와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민법 제781조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민법」 제781조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민법 제781조의 개정 논의를 위해 제781조 각 항의 문제점을 검토해본다.

1. 자녀의 성(姓) 결정에 있어 부성우선주의의 문제점 (「민법」 제781조 제1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 부계혈통중심 조문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성과 성차별

(1)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父姓) 계승을 규정하고 있어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父)와 남성 중심의 규정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딸, 손녀 등에 대한 가정 내의 차별이 내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성우선주의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 가족은 정상 가정이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은 비정상 가정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 존재 의의를 찾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성주의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어,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혼인신고시 자녀 성·본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막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변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어머니 성을 따른 비혼모 자녀가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비취질까봐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법에서 부성이 원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성우선주의원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本)제도의 문제점

전형적인 신분사회에서의 가계 혈통의 표징인 본(本)은 개인의 존엄이 우선되는 오늘날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 존재 의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양부모가 이혼하면서 나를 파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전 본인 김해 김씨는 쓰면 안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남들이 쓰는 본은 왜 쓸 수 없는지 나중에 내 자식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다.”(40대 남성)

위의 본(本)제도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本)은 개인의 인격을 표시하는 성명의 한 부분인 성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는 국적취득자나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친생자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들 포함)은 문중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본은 쓸 수가 없고 흔히 한양 혹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지역명을 따라 본을 창설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성과 본 창설 신청 시 기존에 있는 본 일 경우에는 족보 사본이나 친인척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식별은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이 갖는 기능이나 법률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은 부계혈통 중심의 가(家)의식을 유지하는 것일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것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우선주의원칙은 부부가 자율적으

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부모의 자녀의 성에 대한 결정권과 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여성과 남성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부의 성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의 성을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고 그 결과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하게 한다.¹⁾ 또한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²⁾

다. 혼인신고 시 협의에 의한 성과 본 부여의 문제점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여 부모간 협의에 의한 자녀 성 결정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부성강제주의를 완화한 조항으로 흔히 자녀 성 결정에 있어 부부간 협의를 도입했으므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차별적 조항이 아니라는 근거로 내세워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장래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 전에 미리 협의한 다음 혼인신고 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모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인신고서의 ‘성·본의 협의’ 항목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데 협의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둠으로써

부성이 원칙이고 모성은 예외의 경우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간 협의로 모성을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외에도 당사자들의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과정이 번거롭다.

또한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 성에 관해 합리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가 후에 자녀를 낳게 된 사례들도 적지 않아 성과 본의 합의는 혼인신고 시에 간과되기 쉽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협의에 의한 모성부여제도는 부성의 법정부여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장식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³⁾ 자녀 성을 혼인신고시에 정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개정이 요구된다. 상담현장에서도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자녀 출생 후 모성을 따를 수 없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자녀의 성 결정 시점을 자녀의 출생 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자녀 성 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미달

우리나라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성에 관한 부부간의 평등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하 (g)에서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

1) 신옥주,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성주의원칙의 문제점,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姓)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57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2013, 46면 참조.

2)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결정 결정문 중 별개의견 참조.

3) 정미화, “자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자료집」, 2013. 11, 14면.

일한 개인적 권리”를 들고 있다.⁴⁾ CEDAW위원회에서는 2018년에도 제8차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유보철회를 요청한 바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부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성 불평등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미 세계 각국은 자녀의 성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에게 성을 부여하는 자유를 헌법상 보호되는 부모의 권리로 보고, 대부분의 주(州)는 자녀의 성 결정에 관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⁵⁾ 프랑스는 부, 모 또는 부·모의 성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한 결합성을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311조의21). 독일은 부부가 혼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 중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부모 중 일방에게 결정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1617조 제1항, 제2항). 중국은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 대만은 자녀의 출생등기 전에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사무소에서 추첨으로 정한다(대만 민법 제1059조 제1항). 이상에서 볼 때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 성 결정에 관한 부모의 자율적인 합의를 배제하고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하는 전근대적이고, 국제적 입법기준에도 미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마.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뒤처짐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과 개인의 권리,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져가는 추세이다. 상담현장에서도 부성우선주의원칙과 관련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다. 성인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30대 여성), “나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 하고 싶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내가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남기고 싶다.”(20대 남성)라며, 종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던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20~30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다. 이들 중에는 부성우선주의원칙 개정을 청와대에 청원하겠다고 하거나 위헌확인심판청구를 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차례(2013년, 2018년)에 걸쳐 실시한 자녀 성(姓) 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2013년 1차 조사⁶⁾ - 6,873명 대상

(가)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61.9%(4,252명)로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부성우선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73.2%, 남성 응답자의 46.9%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부성주의원칙은 당연하다’는 응답자의

4)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5)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정미화,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8. 5, 44면 참조.

6) 조사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6,873부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모두 분석하였다.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1.2\%$ 로 나타났다.

55.8%는 ‘사회적 관습’을 그 이유라고 응답했다.

(나) 자녀의 성 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 :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자의 75.2%가 자녀의 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47.7%가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부모의 합의로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자녀의 성 선택 결정 시기에 대한 의견 : 성을 선택하는 시점에 관해 응답자의 75.1%는 출생신고시를 선택했다.⁷⁾ 따라서 현행법에서 혼인신고 시에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의 성을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과는 괴리감이 있다.

(2) 2018년 2차 조사⁸⁾ - 3,303명 대상

(가)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의견 :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에서보다 5.7% 증가한 67.6%(2,234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77.1%, 남성 응답자의 54.5%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13년 조사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부성우선주의원칙이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는 의식이 남성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67.6%)을 상회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한 반면, 50대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성우선주의원칙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의식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10대~40대의 여성과 20대 남성의 10명 중 8명은 ‘부성주의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여성과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인식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나) 자녀의 성 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 : 자녀의 성 결정방법에 대해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한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다.⁹⁾ 국민들은 부성우선주의원칙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녀의 성 결정에 대해 부모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 결정 방법 :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 남녀 및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¹⁰⁾ 그러나 5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결정에 관한 두 번의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볼 때 부성우선주의원칙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성우선주의원칙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사회적 관습이라는 점을 들고 있어 부성우선주의원칙이 관습적으로 학습된 결과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국민들의 의식은 성평등적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성우선주의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법과 제

7)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 3,261명 대상.

8)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3,060부)과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온라인 설문조사(243부)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모두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모두 분석되었다. 본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8\%$ 포인트로 나타났다.

9) ‘부성주의 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2,234명 대상.

10)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1,599명 대상.

도를 앞서 있으며, 현행법규정이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2.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남녀별 법적용차이의 문제점 (「민법」 제781조 제2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781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과 혼인한 여성의 경우에는 부성우선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협의서의 제출 없이 자녀에게 모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배우자가 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 차별을 겪는 결과를 빚게 된다.

3. 성(姓) 결정에 있어서 비혼모자녀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민법」 제781조 제3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 제3항에서는 혼인을 기준으로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혼인 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만 부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비혼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81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제3항은 혼인 외의 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모가 부를 아는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혼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녀의 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신고 시 인지가 되지 않으면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혼인 중 자녀나 혼인 외 자녀 모두 부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동 규정은 비혼모의 자녀에 대해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비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부성이 충돌하여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민법에서도 부를 정하는 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은 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한다는 부성강제 혹은 부성우선주의원칙 규정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외 자녀와 그 어머니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4. 모(母)의 성을 따른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 변경의 불합리성(「민법」 제781조 제5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에서는 혼인의 자녀의 인지 시 자녀

11) 한편 여성가족부가 만 19~7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21년 7월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자녀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찬성 비율은 여성(78.5%)이 남성(65.6%)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가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되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외자의 부는 언제라도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며(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부가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 한 경우 모나 자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성이 바뀌는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했던 바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이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라는 심포지엄을 2003년에 개최한 이래 이에 대한 개정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동규정은 이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성우선주의원칙을 벗어나지는 못함으로써 여전히 차별적인 조항으로 남아있다.

동 조항에서는 인지가 있으면 부모 간에 별도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가 있지 않은 한 부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생부가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지된 자녀의 성이 생부의 성을 따라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 결과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성에 대한 권리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고, 자녀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이 갑자기 변경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비혼모가 인지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일단 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종래 사용하던 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절차상 복잡함이 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혼모나 그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거나 인지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지된 자녀가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의사 혹은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정해진 성을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비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III. 「민법」 제781조 개정의 움직임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민법개정안 마련 과정

상담소는 2009년 8월 20일 ‘개정추진이 필요한 가족법 조항 검토’를 주제로 열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¹²⁾에서 민법 제781조 부성우선주의원칙조항의 개정과 혼인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 계속 사용상의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를 하고 개정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3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에는 의식조사결과 발표와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¹³⁾을 개최를 하여 여론과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동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인 정미화 변호사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의 개정안으로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여 결합성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12) 위원회에는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등이 참석하였다.

13) 본 심포지엄에서는 광배희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와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자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성주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고, 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명숙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하였다.

가정법원의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가 그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결합성은 부모의 동등한 지위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회적 여론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었다. 이에 상담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부 또는 모의 성 중 부모의 합의로 자녀의 성을 정할 것과 본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2014년 2월에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¹⁴⁾ 의견조치 등을 거쳐 “자녀의 성은 부모가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서영교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2018년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제2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5월에는 의식조사결과 발표와 ‘자녀의 성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서 합의로 - 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¹⁵⁾을 열어 민법 제781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27일 개최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는 현소혜 교수가 작성한 ‘자녀의 성과 본 관련 조문 개정안 제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동 개정안에서는 본(本)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을 부의 성, 모의 성 또는 부와 모의 성을 원하는 순서에 따라 결합한 성 중에서 부모가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부와 모의 성을 한글 자모 배열 순서에 따라 결합한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결합성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위원회 논의 결과 개정안이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고 자녀 성 결정에 관해 부모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합성 도입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수차례의 상담소 내부 논의를 거쳐 2019년 2월 21일 열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민법 제781조 개정안으로 “자녀의 성은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담소안이 소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소는 부성우선주의원칙의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

제21대 국회에서도 민법 제781조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의 대표발의안(2020.8.14. 발의)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¹⁶⁾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안(2020.10.6. 발의)에서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고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¹⁷⁾ 장경태 의원의 대표발의안(2021.3.8. 발의)에서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고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 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⁸⁾ 현재 이들 민법개정안은 소관위에 접수되었거나(이은주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정춘숙 의원안).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이며,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15) 본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발표는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권양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하였다.

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U0L0V8G1M4D1K7K3A4Z3O9N4F8X6

1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X0E0C9O2E3I0L9T5N6J1B2S0J3A4

1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C1H0H2R0U9X1F6R4H3G2M7M6O4J2

3. 정부 차원의 노력

민법 제78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EDAW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경우 아직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에 관한 부부로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 조항(CEDAW 제16조 제1항 (g))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CEDAW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협약 제16조 제1항 (g)에 대한 유보의 철회에 관하여 당사국 관련 부처 간에 진행 중인 협상이 2018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보고에 주목한다면서 동 협약 조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었고,¹⁹⁾ 더 이상 유보를 할 명분도 없는 상태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18년 12월 (주)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하여 민법상 부성주의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냈다. 또한 2019년 4월 30일 출생·가족·양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 논의한 후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24일 3개의 안건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었다. 이중 하나가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으로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의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²⁰⁾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

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²¹⁾

4.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 결정으로 당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민법 제781조 제1항 등에 관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²²⁾ 이 중 2016헌마993 사건과 2020헌마851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다. 2021년 3월에 제기된 2021헌마262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데, 청구인은 민법 제78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반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 점, 모성을 따르도록 하려면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등이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제기하였다고 한다.²³⁾ 위 사건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부성우선주의원칙의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진행을 기대한다.

IV. 개정 방안

1. 부성우선주의원칙의 폐기

- 자녀의 성은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로 선택

자녀의 성은 부성우선주의원칙에서 벗어나 국민의 헌법

19)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4 March 2018, p.3

20) www.moj.go.kr/bbs/moj/182/524043/artclView.do

21) 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750

22) https://ecourt.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

2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02> (2021.9.27. 최종검색)

상 권리인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제적 입법 기준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성은 어느 일방의 성을 원칙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한다. 부모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모 중 일방에게 자녀 성에 대한 결정 권한을 수여하고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녀의 성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의 성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독일 민법 제1617조 참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이 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성 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자녀 별성을 허용할 경우에는 부모가 태어난 자녀의 순서대로 각자의 성을 부여할 수 있어 성 선택에 관한 부모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고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이 다름으로 해서 오는 문제들이 해소될 여지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2. 봉건적 가족제도의 잔재인 본(本) 제도 폐지

본(本)은 민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정체성을 공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계층 구분화의 도구로써 차별의식을 구조화하므로 민법규정에서 당연히 삭제하여야 한다.

3. 부모의 혼인형태에 따른 차별 불식

“혼인외 자”가 전제되어 있는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0조 제3항은 부모의 혼인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법의 적용을 달리함으로써 부모의 혼인관계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혼인율이 떨어지는 한편 사실혼 내지 비혼동거의 증가 등 혼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 규정의 차별적인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성 계속사용 권리 보장

자녀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의 협의로 혹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녀인 경우에도 성변경에 대한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친생부의 성으로 변경되며 종전 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도 성을 계속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사례에서 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친부의 성으로 변경하게 된 당사자들은 행정적인 불편과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등의 문제와 아울러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도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성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호소한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하던 성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번거로운 불편들을 감수해야하는 사례자들은 친자관계가 밝혀지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상에서 볼 때, 민법 제781조의2에 ‘성 계속사용권리’를 신설하여 인지나 친양자 파양, 친자관계 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가 달라지거나 새로 기재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는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된 성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V.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법	개정안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姓) 결정] ① 자녀의 성은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을 결정할 부 또는 모의 지정을 구하고, 부 또는 모가 그 지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는 그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삭제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자녀의 성으로 한다. 다만,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다른 일방의 성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창설한다. 다만, 성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⑥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민법 제781조의 2 [자녀의 성(姓) 계속사용권] 자녀가 인지되거나 친양자가 파양된 때 혹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자녀는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로 혹은 자녀가 원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년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상담 사례 분석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으로 성 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여전히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

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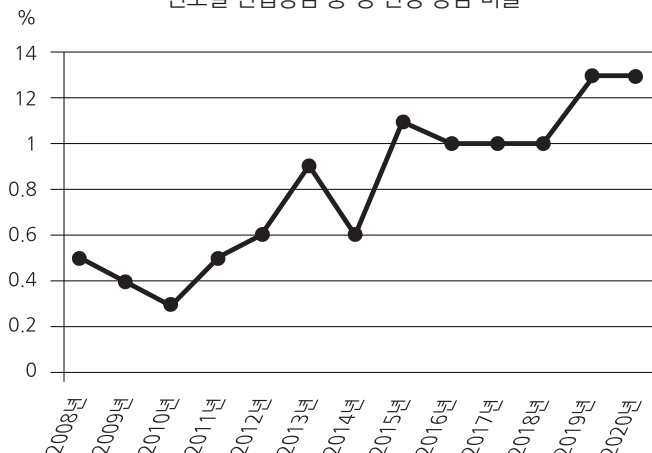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한 상담은 본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3건에서 2020년에는 188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¹⁾ 이것은 본인의 성과 본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불편을 가졌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성불변의 원칙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변화의 반증이기도 하다.

1) 본 상담소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진 2008년부터 면접상담 항목표에 성 변경을 추가하였다.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43건(0.5%)이었으나 2020년에는 188건(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 변경 상담 건수 및 비율

	건	%
2008년	43	0.5
2009년	33	0.4
2010년	27	0.3
2011년	58	0.5
2012년	72	0.6
2013년	154	0.9
2014년	101	0.6
2015년	247	1.1
2016년	221	1.0
2017년	191	1.0
2018년	199	1.0
2019년	246	1.3
2020년	188	1.3

연도별 면접상담 중 성 변경 상담 비율



아래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 진행된 자녀의 성과 본 관련 사례들을 내담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별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현행 법제 하에서 자녀 성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재혼 후 자녀 성 변경

성과 본 변경조항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재혼가정에서 계부와 전혼 자녀의 성이 달라 고통 받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부성을 따라야만 정상가족으로 인정받는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성 변경 상담 사례에서도 재혼 후 자녀 성 변경 상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편 계부의 성으로 바뀐 후 다시 친부나 모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1> 30대 여성

전혼자녀는 5세이다. 2017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다. 내가 전혼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전남편은 전혼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하고 있다. 나는 현재의 남편과 3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이에 나는 자녀들의 성을 동일하게 해 주기 위해 전혼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사례 2> 40대 여성 (재혼한 지 1년 미만, 친양자 입양 전 성 변경)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있는데 재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성만이라도 빨리 바꿔주고 싶다.

● <사례 3> 40대 여성 (전남편 사망, 계부와 이혼 후 계부 성으로 변경)

전남편이 사망하고 재혼하여 아이를 또 낳았다. 큰아이 성을 변경하려다가 미루어졌는데 몇 달 전 이혼을 하였다. 아이들 간에 성이 달라 혼란스러워하여 동생과 성을 같이 하고자 한다.

● <사례 4> 40대 여성 (친생부인의 소 이후 계부 성으로 변경)

1997. 3. 17. 차OO과 혼인신고함. 혼인생활 중 1997년. 2001년, 1남 1녀를 출산함. 2002년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하여 별거 시작됨. 2011. 4. 혼인 외 자 차OO 출산. 2015. 5. 혼인 외 자 차OO(생부 박OO, 현재의 남편) 출산. 2020. 4.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 2020. 5. 6. 넷째의 생부인 박OO와 혼인신고함. 셋째, 넷째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고 셋째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박씨로 변경하고자 함.

● <사례 5> 50대 여성 (계부 사망 후 계부 성으로 변경)

아이 데리고 재혼하여 새로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형제 간에 성이 달라 불편이 컸는데 재혼한 남편의 성격이 유별나 변경할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가 작년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전혼 자녀의 성을 사망한 재혼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 <사례 6> 40대 여성(세 번 혼인, 성이 다른 두 자녀 성을 계부 성으로 변경)

두 자녀의 성이 다름. 자녀들의 성을 최근에 재혼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계부와의 사이에는 자녀 없음.

● <사례 7> 40대 남성
(일반 입양 후 본이 달라 계부 본으로 변경)

처의 전혼자녀를 입양하였다. 아이 성은 나와 같은 김씨이다. 그런데 본이 나는 김해이나 아이는 경주이다. 겉으로 는 티가 안 나지만 서류 발급받으면 다르게 나오니 이것을 맞추고자 한다.

● <사례 8> 50대 여성(이혼 후 모성으로 변경, 재혼 후 전혼 미성년자녀 1인은 친양자 입양, 성인 자녀는 계부 성으로 변경)

이혼 후 모의 성을 따라 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 이후 재혼함. 미성년 자녀는 친양자 입양됨. 성인 자녀를 동생 및 계부의 성과 같이 하고 싶은데 방법은?

재혼 후 계부 성으로 변경했으나 재이혼해 모의 성으로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9> 50대 여성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계부와도 이혼하였다.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는데, 이번에는 딸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기 원한다.

재혼 후 계부 성으로 변경했으나 친부의 성으로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10> 50대 남성(친부)

10년 전 아이 10세 때 협의이혼했고 이혼하면서 아이를 애엄마가 데려갔다. 이후 바로 애엄마가 재혼했고, 아이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했다. 당시 내가 지방에 살아서 동의 여부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아이 성을 내 성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가?

● <사례 11> 20대 남성
(모 재이혼 후 친부 성으로 재변경)

친부 사망 후 모가 재혼하였다. 이후 23세에 계부 성으로 변경하였는데 모가 계부와 이혼하였다. 나는 친부 성으로 다시 변경하기를 원한다.

● <사례 12> 20대 남성
(계부 폭력, 친부 성으로 재변경)

어릴 적 어머니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서 내 성을 양부의 성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양부는 어머니와 나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성인이 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성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고 한다.

● <사례 13> 70대 여성

어린 시절 계부의 성으로 등록되었는데 이제라도 친부의 성을 찾고 싶다.

2. 부모 이혼 후 모의 성으로 변경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따라 부의 성을 따랐으나 부모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부모가 이혼한 후 부와 연관이 끊기거나 부의 폭력 등으로 이혼해 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고, 성 변경만으로도 부와의 법적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 <사례 14> 40대 여성

2004년 이혼 후 지금까지 딸아이와 둘이 지내왔다.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성과 본으로 바꾸고 이름도 바꿔주고자 한다.

● <사례 15> 20대 남성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하였다. 그동안 친부는 양육비를 보내온 적도 나를 만나러 온 적도 없다. 평생 어머니가 단독으로 나를 양육하였다. 한번 내가 친부를 찾은 적이 있었으나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 <사례 16> 50대 여성

시댁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자녀도 자신의 성이 아버지의 성인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내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

● <사례 17> 40대 여성, 70대 여성

(어머니와 함께 상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왔고 임시조치명령도 여러 차례 받은 사실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어머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나는 어머니의 성으로 성 변경 신청을 하고 싶다.

3. 국적취득자 등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써왔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거나 원하는 성과 본을 선택하고 싶어도 본의 경우 법원에서 기존의 본의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도 꾸준히 있다.

● <사례 18> 50대 남성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반귀화하였다. 성과 본을 창설하면서 기존에 쓰던 진주 강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족보사본이나 친인척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다. 그런데 족보는 없고, 5촌 당숙이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례 19> 20대 여성, 40대 남성

(한국 남편과 함께 상담) 베트남 국적자인데 혼인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가족관계등록을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하려고 한다.

4. 비혼모의 자녀 성 변경

비혼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자신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한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부가 인지를 하면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자녀의 성이 부의 성을 따라 바뀌게 된다. 본소의 소송구조 절차에서는 비혼모의 인지 청구 사건에 있어 당사자가 원할 경우 성본계속사용신청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을 몰라 판결 후 성이 바뀐 것에 당혹해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비혼모의 경우에도 부성을 따라야만 정상가족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부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20> 20대 여성

아이 아빠와 몇 번 만나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어 혼자 출산 후 내 성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생부와 연락이 닿아 인지하였는데 아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 아이 아빠는 군에 가 있는데 아이 성을 내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

● <사례 21> 50대 여성, 10대 남성

(자녀와 함께 상담)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 낳은 지 100일 즈음에 생부와 완전히 헤어졌다. 출생신고를 생부가 해서 당시 '부'를 등록하게 되었다. 양육비로는 아이 초등학교 때 몇십만 원 받은 것이 전부이다. 아이는 현재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진학하기 전에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해 놓고 싶어한다. 지난 겨울부터 아이 아빠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이 없다. 가능하다면 양육비 신청도 하고 싶다.

● <사례 22> 40대 여성

일본에서 일본 남성을 만나 08년에 아들을 낳았다. 내 성으로 출생신고했는데 이후 생부가 인지해 아이 성이 후지모토로 변경되었다. 이후 아이 생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아이는 한국에서 일본 성과 이름으로 지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내 성으로 아이 성을 바꾸고 개명도 하고 싶다.

● <사례 23> 30대 여성

나는 비혼모이다. 친자인 줄 알고 아이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을 내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24> 40대 여성

비혼모로 혼자 아이를 낳아 길렀다. 아이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이제라도 생부를 찾아 아이의 성과 본을 생부의 것으로 바꿔 주고 싶다.

● <사례 25> 30대 남성

어머니가 단독으로 출생신고 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아버지의 성만 알 뿐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성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가?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26> 20대 남성

어머니가 비혼인 상태에서 나를 낳아 나는 어머니의 성인 여OO로 출생신고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내 성

은 계부의 성인 한OO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다 2020년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되었다. 인지하게 되면 생부의 성인 백OO으로 변경되어야 하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계부의 성으로 살아와 성 변경 시 사회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한씨를 계속 사용하기 원한다. 생부의 의견서를 받아오라는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생부는 제주도에 살고 관계도 좋지 않아 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부모 이외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례 27> 20대 여성

나는 탈북민이다. 중국에서 비혼인 상태로 중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아이가 곧 입학을 하는데 엄마 성을 따랐을 때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을까봐 아예 다른 성으로 바꿔주고 싶다.

5. 혼인 관계 변동 없이 모의 성으로 변경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혹은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대한 반감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례들도 있다.

● <사례 28> 30대 여성

남편과 혼인신고할 당시 나중에 태어나게 될 아이의 성을 내 성으로 하고 싶었는데 혼인신고 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공무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혼인신고 당시에 결정했어야 했다고 한다. 아직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엄마 성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남편과 협의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 <사례 29> 20대 남성

부모님이 혼인 중이다. 나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원한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내가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을 남기고 싶다.

● <사례 30> 30대 여성

내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 어머니와 남매들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다. 어머니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당하면서도 여지껏 아버지와 살고 있다.

● <사례 31> 50대 여성

2005년 딸을 출산하였다. 딸 출산 후 7개월 때부터 혼자서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이혼은 안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딸의 성은 엄마인 내 성으로 변경해 주고 싶다.

6. 친생추정으로 전 남편 성 따른 후 외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

민법 제844조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친생추정조항은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성 변경 사유가 되기도 한다.

● <사례 32> 30대 여성

나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에서 2001년 김OO과 혼인 신고하였고, 2004년부터 별거하였다. 2007년 탈북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0년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6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7년 북한의 남편과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친생추정을 받아 자

녀의 성은 김씨로 올려졌다. 현재 자녀의 생부인 중국인 남성과 연락되지 않으나 자녀의 성을 생부의 성인 한씨로 변경해 주고 싶다.

7. 부모 사실혼 해소 후 모의 성으로 변경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혼모 사례들과는 달리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지 절차를 통해 부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자녀의 성 변경을 원하는 사례도 있다.

● <사례 33> 20대 여성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몇 달 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최근 남편과 갈등이 극에 달해 헤어졌다. 자녀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내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

8. 혼인 전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출산 후 부의 성으로 변경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반감 또는 부의 특이한 성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신고를 마쳤으나 이 경우에도 주변의 만류로 다시 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 <사례 34> 30대 남성

혼인 당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해 혼인신고시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한 후 기르다 보니 주변에서 아이를 생각해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우리 부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하고자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진영 상담위원

창립 40주년의 해 (2)

1996년 5월, 9월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10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등



5월과 9월의 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10월에 들어 상담소는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지부대회, 회원서예작품 전시회, 기념 만찬 등 풍성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1996년 10월 8일 오전 11시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상담소 창립 40주년 기념식은 정의숙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 국내외 31개 지부의 임직원 등 2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구조 및 상담봉사 변호사, 자원봉사자, 국내외 후원 단체에 감사패를, 상담소 법정이사 및 감사, 후원공로자, 5년 및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외 지부, 장기근속직원에게 공로표창패를 증정했다.

기념식은 전국 28개 지부의 지부기 입장을 시작으로 이창복 이사의 상담소 연혁 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및 공로표창패 수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홍한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정이 존재하는 한 가정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가정문제가 있는 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소의 사회적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성실히 봉사할 것”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의숙 이화학당 이사장은 축사에서 “상담소의 40년은 이 땅의 힘없고 소외된, 빈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이웃이고 등불이었으며 이 땅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구어 가

정문화, 사회문화 변혁에 위대한 탑을 쌓은 기념비적인 시간들”이라며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지부대회는 국내 28개 지부의 임직원, 워싱턴 디시, 남가주 지부 등의 해외 지부에서 온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한 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참가자 소개, 공개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부 운영 정책 토의’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지부대회에서 김홍한 소장은 일선 지부에서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공동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상담소 운영 정책에 관한 종합토의에서는 지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방안, 국내 지부 설치 확장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지부대회를 마친 후 장소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옮겨 진행된 기념만찬에는 이현재 학술원장, 강원용 목사, 정의숙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이태희·김태현 변호사 등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강원용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의 축사와 가수 조영남의 축하, 김태현 변호사의 기념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보호처분 이후 상담 통해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을 깨달은 후
부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 찾아

2019버1***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7회,
집단상담 6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8회

상담기간

2019. 10. 4. ~ 2020. 9. 2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3세)이 있다. 행위자는 초혼, 피해자는 삼혼 짝이며 전혼자녀는 없다. 피해자가 임신을 원했고, 양가의 반대 없이 순탄하게 결혼하였다. 행위자는 결혼 후 단주를 실천하였다.

2019년 6월 사건 당일 행위자가 유흥업소에 간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전화하여 따지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행위자 회사 동료에게 보낸 것에 화가 난 행위자는 집에 와서 공동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유리 2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으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장 서랍장을 주먹으로 때려 부서지게 하는 등 재물손괴를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평소 부부가 다투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져 이웃에서 신고하는 등 경찰 출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피해자의 소리가 커지는 데다가 자신도 무

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겁이 난 행위자가 신고하였다.

행위자는 부부의 갈등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상담 초기 피해자의 욕구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으며, 일과 가정, 아이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폭력적인 대화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석 중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상담이 중지되었는데 2020년 9월부터 진행된 줌을 활용한 비대면 집단상담에 참여한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한 변화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알게 된 것, 공감이 부부관계에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된 것,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등을 꼽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3~4점. 상담종결 시는 5.5점으로 평가하였다. 종결상담 시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나 현재 모두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고, 상담 기간 중 행위자가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인정하였다.

2019버2**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8회,
집단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1(아들) 전화상담 1회 등 15회

상담기간

2019. 10. 23. ~ 2020. 4. 2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1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2019년 6월 사건 당일 피해자1 및 피해자2(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 음악을 하는 피해자1의 생활태도를 지적하며 폭언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폭언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1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차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1의 얼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으며, 방으로 가는 피해자1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또 행위자는 피해자1이 방어하자 주방에 있던 압력밥솥을 휘두르는 특수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2에게 압력밥솥을 휘둘러 코뼈를 골절시키는 특수상해를 가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첫 상담 시 본인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자신 역시 피해자1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피해자2에 대하여는 압력밥솥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초상담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건 이후 피해자1은 집 옆 원룸으로 독립하였으며, 피해자2는 코뼈 수술을 잘 마쳤고 화해하였다. 피해자1은 사건 이후 집에 3~4회 다녀갔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중간점검 시 피해자1에 의하면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독립하였지만 집에도 가고 행위자도 만나며 감정을 풀고 잘 지낸다고 보고하고, 폭력 재발은 없었다고 하였다. 또 행위자와 피해자2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다만, 집을 나올 때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일이 거의 줄어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심정적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계획에 따라 음주문제 상담을 마쳤고, 집단상담 1회 참석 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중단되어 전화상담과 개별상담 진행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 종결상담 시 확인하니 코로나19로 피해자1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피해자1이 이

에 따라 집에 들어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부끄럽고, 피해자1이 앞길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결국 아버지인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피해자1을 보듬고 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1과 잘 지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2019버2**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5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등 15회

상담기간

2019. 12. 12. ~ 2020. 10.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16세, 14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첫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가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옷장을 발로 차서 옷장 거울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10일 후 두 번째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식탁유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성격차이를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피해자와 처가식구들의 무시, 모욕 때문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건 이후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며 이혼 의사가 강하였다. 피해자와 화해할 생각도 없고, 함께 상담을 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였다. 사건 당시 부부는 행위자의 부채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이것이 사건 발생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접근금지 기간 중 한두 번 집에 다녀온 것 같지만, 자신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에 들어오는 못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였다. 아이

들은 이혼을 권하지만 자신은 행위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상담을 진행하던 중 2020년 3월에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를 수용하였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가 집을 나가 지내는 사실을 시가 식구들이 알게 되면서 행위자가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고, 행위자가 집에 다니러 왔을 때 대화를 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밥 먹고 갈래?”라고 물었더니 행위자가 마음이 누그러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나쁜 습관은 오래되었고 한 번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태도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갈등 요인 발생 시 폭력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3점, 종결 시에는 8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을 나왔지만 다시 들어간 이후 잘 지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해 폭도 넓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의 부채를 피해자와 분리하여 행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담 이후의 변화로 행위자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꼽았다. 사건 당시에도 일상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였지만 사건 발생 시점의 부부관계는 0점, 종결 시점에는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로부터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2**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8회,
음주문제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0. 2. 6. ~ 2020. 10.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 당일 여성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간 일을 피해자가 의심하고 따지자 화를 내며 부엌 싱크대에 꽂혀있던 부엌칼로 협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와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혼을 생각했으나, 행위자가 잘못을 빌어 용서하였고 노력하며 살기로 합의하였다.

초상담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하였고,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4점, 현재는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행위자가 다정다감해지고, 가정에 충실하며, 술자리를 짧게 하고, 피해자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줄이라고 한 점을 유념하여 사건 이후 절주 노력을 하였고, 상담 중에도 실천하였다. 초상담 시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8~9점으로 평가하였다. 상담 기간 중 실천과제로 특히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줄이기로 다짐하였는데 이후 상담 과정에서 행위자의 실천 노력이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였는데,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식사시 반주를 하는 정도로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줄였다고 보고 하였다. 종결상담 시 부부관계는 9.5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는데,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관계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이 잘되는 것이 만족도 향상 요인이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행위자가 음주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태도를 정립하기 바랐다.

행위자는 종결상담 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향상 원인으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부부 각자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열심히 임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사 실 혼 ⑤

●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돈을 가끔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실 혼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Q 저는 10여 년 전부터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지방에 살고 있어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중절하였고, 10여 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고, 저와의 교제마저 단절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도 지급하는 등 혼인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으므로 저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사실혼이란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일방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과 수십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아내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A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령, 동거 기간, 혼인생활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60대 남성입니다. 30대인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 가출을 일삼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아들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저의 먹살을 잡고 폭언을 심하게 하였고, 분을 이기지 못해 칼을 들고 제 아내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면 문을 무수히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두려워도 방문을 열고 자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제게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밀쳐서 아들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상처가 났다며 112에 신고했고 저는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들과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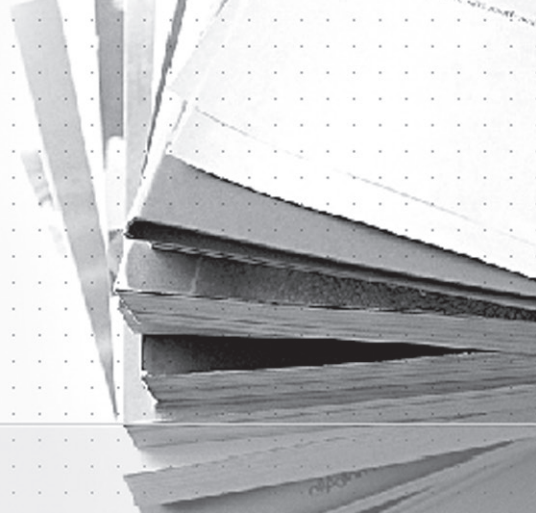
A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폭력적인 아들로 인해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드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부모로서 최대한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이 왜 저럴까 이유를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폭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분노감, 공격성, 충동성, 우울이나 불안 등 아들 자신이 가진 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과거 부모님과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셋째,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해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것이며, 넷째,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 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부모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현재로서는 귀하께서 상담처분을 통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개별상담 및 가족(부부)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들과의 상담을 병행하면서 부모와 한집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서로 무엇을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는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측면에서 탐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 또다시 폭력을 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들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공권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신고를 꺼리셨다면, 앞으로는 아들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아침 신문 1면에서 세 살 된 아이란 쿠르디의 사진을 보았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꼬마가 터키 해안에 엎드려 있었다. 파도가 밀려와 아이를 적시고 있었다. 시리아 난민 꼬마, 세상에 와 이제 세 살인데 난민이라니. 뭐랄까, 인류애가 박살 나는 경험이다. 아침부터 눈가가 뜨겁고 방향 모르는 분노가 치솟았다. 현대 세계사적 갈등의 대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해 화가 나고 불체자, 외노자라는 걸려있는 줄임말, 난민 절대 안대를 부르짖는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도 올라왔다. 2015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난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옹호 발언을 했던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그 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매도당하는 게 여전한 우리 현실이다. 이번 아프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극적으로 미라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이라크인들을 '특별기여자'로 데려왔고 그 호칭에 대해 외신들은 호의적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불법(체류,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여,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불법자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아름다운 사람과 더 아름다운 사람,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자? 어떻게 사람이 불법일 수 있는가?” - 엘리 위젤 (노벨상 수상자, 홀로코스트 생존자)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글이다. 행위가 아닌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말을 써서 안 된다는 이 엄숙한 선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 책은 가나의 열두 살 소년 이보가 아프리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그래픽 노블이다. 이보는 혼자 남았다. 누나는 몇 달 전에 떠났고, 이제 형마저 떠났다. 갓은 우여곡절 끝에 먼저 형을 만나 형과 함께 사하라 사막을 건너 온 갓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트리폴리로 간다. 그리고 무자비한 바다와의 싸움에 뛰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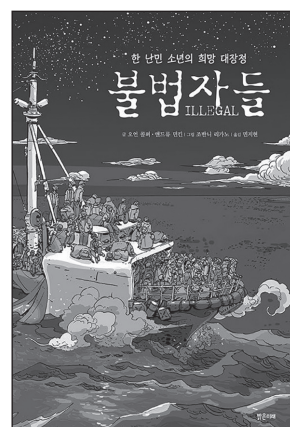
난민 문제는 예민한 국제 문제이고 누구도 쉽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다. 책에서 이보를 비롯한 아이들과 배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이 ‘유럽’을 꿈꾸는데, 이들에게 절실한 현실적 대안이겠지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유럽이야말로 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총체적 난국의 일차적 원인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 책은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과 닮음을 정도로 난민의 삶을 신랄하게 그려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더 쉽고 생생하게 난민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어린 소년의 시선을 빌려 난민, 이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 이 책은, 각 상황에 걸맞게 구성된 디테일한 스토리와 일러스트 덕분에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 난민 소년의 희망 대장정 불법자들

오언 콜퍼 · 앤드류 던킨 글
조반니 리가노 그림 민지현 옮김

밝은미래, 2021



파도가 지나간 자리

감독 데릭 시엔프랜스

출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레이첼 와이즈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오스트레일리아. 참전 군인 톰(마이클 패스벤더)은 전쟁터에서 겪은 참상의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외딴 섬 야누스 록의 등대지기로 자원하고, 그곳에서 마주친 생기 넘치는 이저벨(알리시아 비칸데르)과 사랑에 빠진다. 행복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꿈꾸며 시작했던 결혼생활에, 이저벨의 두 번의 유산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파도에 떠밀려온 보트 안에 어떤 남자의 시신과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다. 아기에게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 톰은 우연히 아기의 친엄마 해나(레이첼 와이즈)의 존재를 알게 된다.

M.L. 스테드먼의 소설 <바다 사이 등대>(홍한별 옮김, 문학동네 펴냄)를 영화화한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긴 세월

동안 벌어진 여러 사건을 축약하는 각색이 가장 중요한 종류의 영화다.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꾸리고, 불운한 유산을 경험하고, 바닷물에 떠내려온 아이를 구조하여 키우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아이의 친엄마가 등장하고, 그 여성이 겪었던 비극적인 사고를 설명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가의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결국 모종의 선택이 이어지는 긴 과정이 모두 담겨야 한다. 그리고 132분의 러닝 타임 동안, 영화는 길고 복잡하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숨겨진 가슴 아픈 멜로 드라마를 적절한 압축과 감정선의 조절을 통해 제대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영화 전반부를 책임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무인도 주변의 압도적인 풍광의 스펙터클이 인물의 감정선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톰이 지키는 등대는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다른 종류의 성질이 깃든 물이 만나 뒤섞이는 곳의 해류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이곳을 지나는 배들은 필연적으로 비틀거리며 방향을 잃게 된다. 그때 그 자리를 밤낮으로 지키는 등대가 방황하는 배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톰은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참혹한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은 왜 그들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역시 전쟁터에서 오빠들을 잃은 이저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억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톰은 이저벨의 생명력에 저도 모르게 감화되



면서 서서히 변화해나간다. 그리고 이저벨이라는 구원 덕분에 자신이 살아난 것처럼, 길 잃은 배들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상실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저벨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이저벨은 죽은 오빠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이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홀아비라고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따로 부르는 말이 없어요.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대도 계속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불리죠”라며 상실의 고통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조기유산을 거듭했을 때, 자신이 안쓰럽게 여기던 부모님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 어머니였지만 아이는 사라지고 없는 그 상태에 이저벨은 거의 미쳐버릴 만큼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남자와 함께 떠밀려온 아이를, 일단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키우겠노라는 고집을 부린다. 남자, 아마도 아이의 아빠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거기 없

었기 때문에, 아이가 천애고아라고 추측하는 게 대단히 사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 그런 선의와 자기 위안이 뒤섞인 결정이, 이후 몇 년 뒤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이다.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 각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상실의 비극을 경험했던 두 여성이 아기를 사이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될 때, 그때부터 영화는 실재 없이 눈물샘을 자극한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이렇게 작은 마을 구성원들에게도 믿을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신들이 겪었던 혼란을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도 물려주게 된 어른들은, 애정과 윤리 사이의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바다 사이의 등대’처럼, 도덕적 갈등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지극한 사랑이었다. 동반자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 흔들리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 잣대가 그것이었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과 협약체결

본소는 지난 1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종전 지부였던 전국 16개 기관과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협약증서는 우편으로 교환하였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연계 등 종전 지부와 의 연계사업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 의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소 발행 출판물과 법률구조연계에 필요한 출판물 등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본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업무협력기관 지원의 일환으로 컴퓨터 및 상담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2021.9.29. 현재

지역 (前 지부)	전국협력기관	대 표	전 화 번 호
구리·남양주	(사)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전병화	031-551-9976
동해	사단법인 바로	김해동	033-534-0187
부천	(사)경기가정상담소 부천지부	박미애	032-667-2314
성남	(사)경기가정상담소	이정숙	031-707-6661
송도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이영미	032-834-1369
수원	(사)경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박윤선	031-243-4600
울산	(사)울산성가족상담소	정민자	052-246-9568
익산	(사)익산가정상담센터	배은희	063-851-0265
인천	인천가정상담센터	권오용	032-865-1120
전주	전주가정상담센터	곽영신	063-244-2930
정읍	정읍가정상담센터	송경숙	063-535-3705
중구	양실가정상담센터	제오복	02-2238-6551
창원·마산	창원가정상담센터	서정희	055-261-0280
제천	제천가정상담센터	권영애	043-644-5690
청주	(사)청주가정폭력상담소	정복자	043-257-0086
평택·안성	평택가정상담센터	석현숙	031-611-4251

여성가족부 지원

‘2021년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현장점검 실시

지난 9월 2일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에서 본소를 방문하여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운영 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현지 방문 확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소는 위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0건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공공·생활정보 연계 서비스 시작

본 상담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통계청과 공공·생활정보 연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본소는 법률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문제와 관련한 각종 사안들을 조사·연구하여 발표하고 있고, 수시로 상담 통계 및 사례들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슈별로 통계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이용자 중심의 통계 활용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과 관련 있는 기관 대상으로 공공·생활정보연계서비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통계청에서 먼저 본 상담소에 공공·생활정보 연계 서비스 사업을 제안하였고, 본 상담소 역시 이용자들이 유사 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청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 연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을 통해 각 기관은 홍보 및 이용자들의 자료 활용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부패 방지 위해 각종 청렴 행사 개최

청렴 문구 공모전 개최

명절 앞두고 청렴 편지 발송

1인 1개 청렴 화분 키우기 행사

청렴 캠페인 개최

본 상담소에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다양한 청렴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먼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작 1건, 우수작 3건, 입선작 10건을 선정하였다. 우수작 3건을 먼저 선정한 후 1층 현관에서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우수작 1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작]

공정씨를 심고 투명물을 뿌리니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우수작]

(1) 공정씨를 심고 투명물을 뿌리니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2)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3) 청렴백신으로 부패예방!

[입선]

(1) 함께 해요! 청렴 실천!

(2) 당신의 청렴함, 믿겠습니다.

(3) 내가 실천하는 청렴이 모두가 신뢰하는 사회가 된다.

(4) 청렴스테이션, 청렴한 이번 정류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5) 오늘의 청렴 내일의 우리를 지킨다.

(6) 생각하는 청렴에서 실천하는 청렴으로!

(7) 버릴 것은 부패 의식, 지킬 것은 청렴 의식

(8) 나부터 지킨 양심, 모아지면 청렴 한국!

(9) 나의 청렴 우리의 청렴 모두의 청렴

(10) 청렴, 신뢰를 쌓는 지름길

9월 17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청렴 편지’를 발송하였다.

9월 23일에는 1인 1개 청렴 화분 키우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 직원이 ‘청렴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한 화분을 1인 1개씩 키우면서 자라나는 화분을 보며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다. 같은 날 청렴 문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문구들을 전 직원이 각자 들고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는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관련사진 2번)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상담통계

총 건수 5,199			
법률상담 (4,552)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802	3,611	138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88	59	100	

• 인터넷 정보 이용 35,635

2021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199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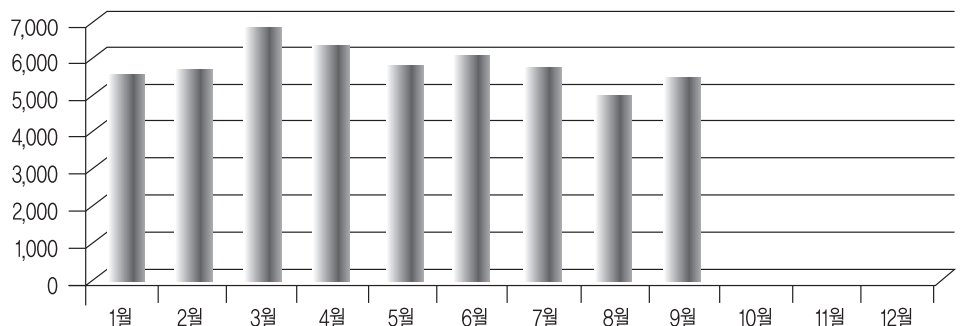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552건(87.6%), 화해조정 488건(9.4%), 소장 등 서류작성 59건(1.1%), 소송구조 100건(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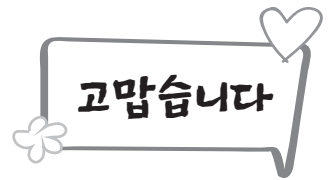
법률상담 4,55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8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3%→23.6%), 사실혼 해소(1.0%→1.1%), 면접교섭권(2.6%→3.6%), 친생부인(0.7%→1.0%), 친생자존부(2.3%→2.5%), 입양(0.9%→1.0%), 파혼(0.1%→0.2%), 가족관계등록부

(3.2%→3.7%), 친양자(0.7%→0.8%), 파양(0.2%→0.4%), 가사기타(5.9%→1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2%→0.3%), 민사기타(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55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02건(17.6%), 전화상담 3,611건(79.3%), 인터넷상담 138건(3.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고맙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7.1.~ 8.31)

- 김은빈, 한해인

동국대학교 현장실습(8.2.~ 8.27)

- 강유나, 구평우, 김진솔, 전해웅

● 출장상담

9.1.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1일과 29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사건에 참여하였다. 7일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9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 주최 상속권상실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14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 분과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15일에는 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최한 2021년 면접교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간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1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 온라인 조정위원연수회에 참석하였다. 2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3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학대예방경찰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교육에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주요 결정례를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원격강의를 하였다.

2021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강지연, 김남영, 김민주, 김민지, 김승현, 김준호, 김지민, 김지윤, 김지현, 김찬우, 김효진, 김현정, 김현정2, 김효빈, 노재욱, 류지원, 문예빈, 박금주, 박도윤, 박성환, 박연우, 박지희, 봉수빈, 송규진, 손사빈, 신수민, 오지현, 이상희, 우정연, 윤진호, 윤채은, 윤호열, 이서현, 이상아, 이세진, 이송현, 이수민, 이시현, 이주연, 장보인, 조예원, 장윤아, 장지수, 전우인, 전우정, 정유나, 정채연, 조예빈, 천윤빈, 최윤서, 최세은, 최예진, 한봄이, 황준철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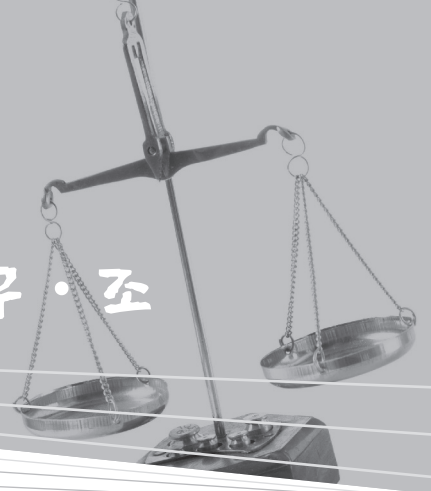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기물파손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9-181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3세)와 피고(남, 67세)는 1985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일로 다투면서도 서로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왔다. 2004년경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말없이 찔릴방을 다녀온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화분을 던져서 깼다. 2019년경 원고는 기존에 하던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끝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기획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기획부동산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피고는 2019년 2월경 원고가 피고 선배의 아내와 등산을 다녀오자, 기획부동산 사람과 함께 등산을 간 것으로 원고를 의심하며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가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자,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부수고, 공을 칼로 찢고, 주방 형광등을 던져서 깼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잠든 사이 원고의 신발 11켤레 정도를 가위로 잘라서 버렸다. 다음날 원고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쉼터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2019년 2월경 발생한 손괴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21. 3.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생계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3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4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외도로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3,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배우자의 이런 불성실한 생활이 반복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신청인은 생전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꾸준히 채무를 상환해 나갔다. 하지만 직업군인이었던 배우자가 퇴직하면서 3인 가구의 생계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고, 채무는 더욱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배우자는 구직이 어려워 일용근로를 전전하였고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신청인과 가정불화가 극심해졌다. 급기야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놀란 신청

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가족쉼터에 입소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가족쉼터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취업준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채무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2,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명의도용을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4살 때 뇌성마비로 지체장애가 생겼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해 음식점, 공장 등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소득은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기에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02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신청인에게 5개월간 숙식을 지원해주고 매일 용돈도 주었는데, 어느 날 신청인에게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몇 가지와 신분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잠시 고민하였지만 그 동안 자신에게 대해 준 것을 빚대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청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서류를 받아 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신청인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였고 신청인은 어떻게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일용근로를 전전하다 2016년부터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였다. 노숙인 시설에서 자활근로를 하며 생활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끝나 2020년 6월경부터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이처럼 신청인은 명의도용 피해로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장애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단독 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하여 친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함

법률구조 2021-1-131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지정

내용 : 청구인(여, 48세)은 사건본인(남, 18세)의 친모이다. 2015년 9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협의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친부를,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뇌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건본인 친부의 요청으로 사건본인은 친부의 집에서 친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2016년경 사건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여 주중에는 친부가, 주말에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을 위한 양육비도 청구인과 친부가 함께 부담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경 사건본인의 친부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21년 1월경 사망하였다. 사건본인은 친부가 사망하며 많은 채무를 남겼기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친부가 사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1. 5. 28.)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21-1-186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7세)과 상대방(남, 45세)은 2006년 7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1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청구인에게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학습지 교사를 하며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상대방은 이혼 후 2년 가량 면접교섭을 시행하였으나, 점차 사건본인이 이를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면접교섭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다 사건본인이 9살이 되던 해에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하여 면접을 하고 왔으나, 그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청구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재혼 자녀들(2명)을 포함하여 다자녀 혜택으로 약 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본인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 8. 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1.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무책임한 친부모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한
외조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판결**

법률구조 2021-1-226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사건본인(여, 4세)을 2016년 11월 출산하였고, 2019년경 이혼하여 당시 친권자로 친부가 지정되었다. 친모는 사건본인이 돌 되기 전에 가출하였고, 친부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외조모인 청구인(여, 50세)에게 부탁한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오래 전부터 별거 상태였으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지가 없었다. 그로 인해 청구인은 돌 되기 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2019년 6월부터는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사건본인을 양육 중이다. 친부는 어린이집에서 몰래 사건본인을 데려가 2주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을 친조모에게 맡긴 적

도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가 외조모인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친부모는 앞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지와 면접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건본인은 생후 10개월에 친모의 부주의로 전신 화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화상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하나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본인의 병원 접수 및 입원 절차 등이 지연되어 신속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앞으로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핸드폰 개통, 통장 발급, 여권 발급 등의 상황에서도 법적 제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청구인은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20.)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1. 10.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기준일: 2021. 9.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미성년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미성년후견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 나. 보증행위
 - 다. 의무만을 담보하는 행위
 -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마. 금융계좌의 해지 및 금융계좌로부터 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 바. 소송행위
 - 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1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1월 8일, 11월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 시	강 의 제 목
10월 28일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1년 10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10월 27일 (수) 오후 14:00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및 비대면 화상회의(ZOOM) 접속

순서

개회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인사말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수탁상담통계 발표

차연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발표자 소개 및 진행

좌장 곽배희 소장

주제 발표

신연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토론 발표

장희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윤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황순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질의응답 및 정리

참여안내 ▶

- 코로나 19로 인하여 본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본 상담소 회원 등 이외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메일(webmaster@lawhome.or.kr) 또는 전화(1644-7077)로 사전에 신청하신 분에게는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예약 신청하신 분들은 화상회의(ZOOM)로 심포지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백신으로 부패예방!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1년 10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